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	---

제출년월일 : 1998. 2. 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97.10.1자로 지방세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류의 위임·위탁송달 방법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등 법률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납세고지서등 서류의 송달방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위임·위탁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위탁송달하는 경우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 허가 등의 제한 규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제25조로 이관됨.(안 제8조)
-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함.
-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

### 3.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 지방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
- 지방세법 제77조제4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 “영 제27조의2”를 “영 제25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과세전척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척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척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6조의2(서류의송달방법) ①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8조(허가 등의 제한) ----- 영 제25조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14조(구세심의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③위원회는 위원회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p>	<p>1. 지방세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p>
<p>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p>
<p>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p>
<p>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p>
	<p>5.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p> <p>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